포항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

2)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3)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9.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동진 체육산업과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예약·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활용실태 점검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나. 계약사항 위반 또는 지도·감독 거부 등의 사유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1년간 위탁운영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안 제7조제2항)

다. 체육시설 이용 안내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라. 체육시설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정보 공개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4항)

3)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경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반기별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통합예약시스템 구축과 예약관련 정보 사전공개로 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며, 그 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공체육시설의 특정단체 사유화 등은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인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시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계획중인 통합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도 포함하여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